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89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민병덕・염태영・이강일
이인영・조계원・김문수
김태년・이수진・김영배
황정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급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때”를 “때(다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건설위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4. (생 략) ② ~ ⑥ (생 략) <신 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 1. (현행과 같음) 2. ---------- 때(다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

	1항에 따른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용한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생 략) <신 설>	제30조의2(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
⑤ ~ ⑦ (생 략)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⑨ ------ 제8항----------.